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 10. .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사항

1.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5항,「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7호(2026.1.2.)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정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따라 우리 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심사결과는 적격심사 후 해당 조사기관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조사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5. 조사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한다.

6. 심사 시 기간계산 및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7.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는 심사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의 합계가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8. 심사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심사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한다.

9. 심사자료 제출 시에 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0. 공동도급으로 조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조사기관 심사항목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항목별 세부심사방법

Ⅰ. 조사이행능력분야

1. 연구조사실적

·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입찰방법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실적	최근 3년간 조사실적(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외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평가)	실적점수 = (최근 3년간 실적금액합계/해당용역 추정가격)*100	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1) (삭 제)

2)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조사용역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3)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4)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이란 해당용역 입찰의 원인이 되는 조사용역을 말한다.

5) "모든 국가유산 조사용역 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7)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함,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함

2. 연구조사능력

· 조사인력 수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참여조사기관의 등급별 인력기준에 따른 조사인원 수 평가	참여조사기관의 인력으로서 입찰참가일 당시 현재 근무자	해당용역에 참여한 참여조사기관 보유 인력 수 규모(명)	<별지 1-1> 참조

1)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동일하게 준조사원도 1명이 승급하여 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준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평가

· 발굴보고서점수

구 분	판단기준	산정방법	평 점
발굴보고서 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발굴보고서 점수 수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점수=직전년도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 합계 /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

1)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한다.

2)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4. 연구조사기반

· 시설확보수준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시설수준을 평가하여 점수부여	A*. 수장시설 (기준면적: 100m^2)	(해당 조사기관 수장시설보유면적/기준면적(100m^2)) *100	A. 150% 이상 ((A*+B*)/2): 5 B. 120% 이상 ((A*+B*)/2): 4.7 C. 120% 미만 ((A*+B*)/2): 4.4
	B*. 보존처리시설 (기준면적: 33m^2)	(해당 조사기관 보존처리시설보유면적/기준면적(33m^2)) *100	

1)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조사기관 등록기준 충족확인서'에 기재된 시설별 면적자료로 확인한다.

5. 기타사항

연구조사실적 및 연구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 심사항목 및 배점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신용평가등급	20.0	A.	A- 이상	20.0
			B.	BBB+	19.8
			C.	BBB0	19.6
			D.	BBB-	19.4
			E.	BB+, BB0	19.2
			F.	BB-	19.0
			G.	B+, B0, B-	18.8
			H.	CCC+ 이하	18.0

2.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추정가격대 별 세부심사기준(10억이상 ~ 1억원미만)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제외)”을 통해 평가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Ⅲ. 입찰가격 평가방법

1. 가격평가 산식

가. 가격평가는 해당용역의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에 따라 추정가격별 사전 제시된 평가산식에 따라 환산함

구분		내용	비고
10억원 이상	30점	30-1.87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1>
5억원 이상	30점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2>
2.5억원 이상	40점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3>
1억원 이상	45점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4>
1억원 미만	50점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별표 5>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5) 2.5억원 이상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6)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7) 1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2. 낙찰하한율

가. 조사이행능력을 만점으로 한 경우 각 추정가격대별 적격통과점수 획득을 위한 최소 가격점수를 결정하는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은 10억원 이상(79.995%), 5억원 이상(81.995%), 2.5억원 이상(82.995%), 1억원 이상(86.745%), 1억원 미만 (87.745%)에 따라 각각 차등적으로 적용됨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통과 가능 낙찰하한율>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통과점수	낙찰하한율	최저 가격점수
10억원 이상	85점	79.995%	15
5억원 이상	85점	81.995%	15
2.5억원 이상	85점	82.995%	25
1억원 이상	88점	86.745%	33
1억원 미만	88점	87.745%	38

나. 조사이행능력을 만점으로 한 경우 낙찰하한율에 따른 최저가격점수는 10억원 이상(15점), 5억원 이상(15점), 2.5억원 이상(25점), 1억원 이상(33점), 1억원 미만(38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점됨

Ⅳ.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가. 신인도는 배점한도 이외에 해당 조사기관에게 가·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점의 경우에는 해당 조사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만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점인 경우에는 감점된 만큼 적용하여 평점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

Ⅳ. 신인도 분야

1. 용역전문성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조사기관 소재지 동일 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기관 소재지가 일치하고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해당 용역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1

1) 해당용역 조사지역 및 소재지의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두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치하더라도 인정한다.

2) 입찰공고 시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와 동일 공종(공종의 구분은 본문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따름)을 명시한다. 다만, 해당용역 조사지역에 조사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조사지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공고 시 후행조사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용역의 선행조사 존재여부와 선행조사(용역)가 있을 경우 해당 용역 입찰건의 정보(공고번호, 조사명 등)를 명시한다.

4) 해당용역의 공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해당공종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사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5) 조사기관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선행용역 수행실적은 계약관련서류 또는 국가유산청 허가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6) 선행조사는 해당 용역 입찰 이전에 선행 수행된 특정 조사용역(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의 결과(중간과정 포함)를 바탕으로 발주된 경우 그 선행 수행된 조사를 말한다(본문 제4조제1항).

7) 동일지역 내 동일공종 조사실적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가점이 모두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업무정지(경고)처분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국가유산청이 부과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경고) 처분기준에 따른 감점부여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 기준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기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	−2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1회 받은 기관	−1
		최근 3년간 경고 처분 1회 이상 받은 기관	−0.5

1)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의 기준 법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해당 법률을 인용한 매장유산조사 관련 고시, 훈령을 모두 포함한다.
2)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을 둘 다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만을 적용한다.
3)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한다.
4)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 집행정지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안전관리 관련 산업재해율이 존재하는 경우 감점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부실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3% 이상인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0.5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감점한다.
2)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3) 적격심사 대상 조사기관은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공동수급체 구성	10억원 이상 구간의 용역에 참여하는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적용	3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2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10억원 이상 구간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최소 30% 이상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문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여성고용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여성고용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용인원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0.5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0.2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전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여성 고용인원	3	3	5	6	5	5	5	7	10	9	9	9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9	12	12	13	13	12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여성 보유인원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장애인고용

구 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 점
장애인 고용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용인원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1.0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3인 이상인 기관	+0.5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A(여성)","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전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3	3	5	6	5	5	5	7	10	9	9	9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9	12	12	13	13	12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전체 고용인원 수는 입찰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Ⅴ. 결격사유 평가방법

1. 결격사유

< 결격사유 >

구분	내용	등급	평점
1.이행위험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조사기관	-20
2.부정당업자제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일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	-20

1) 입찰일 이후 결격사유발생시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Ⅵ.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목록<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심사항목	연번	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증빙서류번호)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자	양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소정양식)	신청자	양식 2
조사이행 능력증명 종 합	3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소정양식)	적격심사 대상기관	양식 3
조사실적	4	조사수행 사실 확인서	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연구조사 능력	5	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국가유산 협업포털 발급번호 (위변조방지)
연구조사 평가	6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연구조사 기반	7	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경영상태	8	기업신용평가	평가기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신 인 도	9	용역전문성 확인서	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10	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국가유산 협업포털 발급번호 (위변조방지)
	11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필수)	안전보건공단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12	여성·장애인 국민건강의료보험 확인서(선택)	국민건강 보험공단	
	13	여성·장애인 국민연금 확인서(선택)	국민연금 공단	
기타증명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조사이행능력(전문성)(50점)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10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 연구조사평가(25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5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Ⅱ.경영상태(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경제성)(30점)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Ⅰ+Ⅱ+Ⅲ 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1.0, +0.5
		마. 여성고용	+0.5, +0.2
		바. 장애인고용	+1.0, +0.5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1.87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_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 조사이행능력(전문성) (50점)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10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 연구조사평가(25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5
	4. 연구조사기반(5점)	가. 수장 및 보존처리시설 수준	5
Ⅱ.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30점)	1. 가격점수(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2.5×|(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 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 조사이행 능력(전문성) (40점)	1. 연구조사실적(10점)	가. 조사실적(해당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10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Ⅱ. 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 입찰가격 (경제성) (40점)	1. 가격점수(4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계	Ⅰ+Ⅱ+Ⅲ합산점수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Ⅳ. 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 +0.2
		바. 장애인고용	+1.0, +0.5
Ⅴ. 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0−3×|(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90/100이상인 경우에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35점)	1. 연구조사실적(5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용역금액)	5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Ⅱ.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45점)	1. 가격점수(45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5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30점)	1. 연구조사실적(5점)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5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 연구조사평가(15점)	가. 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15
Ⅱ.경영상태 (20점)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50점)	1. 가격점수(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Ⅳ.신인도	1. 신인도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2. 부정당업자제재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에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별표 6>

모든 추정가격 적용

<table>
<tr><th>구 분</th><th>심사분야</th><th>심사항목</th><th>배 점</th><th>평가기준</th></tr>
<tr><td rowspan="5">Ⅰ.조사
이행능력</td><td>1.연구
조사
실적</td><td>가. 해당 입찰공고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조사 실적 금액</td><td>10(5)</td><td>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td></tr>
<tr><td rowspan="3">2.연구
조사
능력</td><td rowspan="3">가. 해당용역에 참여 조사기관의 보유 인력 수</td><td rowspan="3">10</td><td>책임조사원: 1.5점 A. 2명 이상: 1.5 B. 2명 미만: 0.5</td></tr>
<tr><td>조 사 원: 6점 A. 2명 이상: 6 B. 2명 미만: 5</td></tr>
<tr><td>준조사원: 2.5점 A. 2명 이상: 2.5 B. 2명 미만: 1.5</td></tr>
<tr><td>3.연구
조사
평가</td><td>가. 직전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평균 점수</td><td>25
(20)
[15]</td><td>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td></tr>
<tr><td>4.연구
조사
기반</td><td>가. 등록기준 대비 수장 및 보존처리 시설 비율</td><td>5</td><td>A. 150% 이상: 5
B. 120% 이상: 4.7
C. 120% 미만: 4.4</td></tr>
<tr><td>Ⅱ.경영
상태</td><td>1.신용
평가
등급</td><td>가. 기업신용평가등급</td><td>20</td><td>
<table>
<tr><th>등 급</th><th>평 점</th></tr>
<tr><td>A− 이상</td><td>20.0</td></tr>
<tr><td>BBB+</td><td>19.8</td></tr>
<tr><td>BBB0</td><td>19.6</td></tr>
<tr><td>BBB−</td><td>19.4</td></tr>
<tr><td>BB+, BB0</td><td>19.2</td></tr>
<tr><td>BB−</td><td>19.0</td></tr>
<tr><td>B+, B0, B−</td><td>18.8</td></tr>
<tr><td>CCC+ 이하</td><td>18.0</td></tr>
</table>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td></tr>
</table>

적격심사 자료 작성요령

1. 심사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적격심사서 표지

나. 적격심사신청서(양식 1)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양식 2)

라.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양식 3)

마.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목록표' 상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3. 규　　격 : A4(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 적격심사서

2026. ○.

(재)OO문화재 연구원

[양식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 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1부

2. 매장유산 조사용역 이행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ㅇ ㅇ ㅇ 기관장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수요기관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OOO기관 계약담당자 (인)

[양식2]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1. 심사대상용역

입찰일시	
용 역 명	
용역기간	-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공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조사이행 능력	연구조사실적	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조사인력수			
	연구조사평가	발굴보고서			
	연구조사기반	시설확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신인도	용역전문성				
	업무정지(경고)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고용률				
	장애인고용률				
결격사유	이행위험				
	부정당업자제재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양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조사용역 건수</th><th>조사용역 금액</th><th>비고</th></tr>
<tr><td>조사
실적</td><td colspan="2">최근 3년간 실적</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조사
능력</td><td colspan="2"></td><td>인원 수</td><td></td><td>비고</td></tr>
<tr><td rowspan="3">조사
인력수</td><td>책임조사원</td><td></td><td></td><td></td></tr>
<tr><td>조사원</td><td></td><td></td><td></td></tr>
<tr><td>준조사원</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보고서 평가건수</td><td>평균</td><td>비고</td></tr>
<tr><td>발굴
보고서
점수</td><td>직전연도</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조사
기반</td><td colspan="2"></td><td>면적</td><td>기준대비
비율(%)</td><td>평균(%)</td><td>비고</td></tr>
<tr><td rowspan="2">시설
확보
수준</td><td>수장시설
(100m^2)</td><td></td><td></td><td rowspan="2"></td><td></td></tr>
<tr><td>보존시설
(33m^2)</td><td></td><td></td><td></td></tr>
<tr><td rowspan="11">신인
도</td><td colspan="2"></td><td>사업장소재지</td><td>동일공종 실적</td><td>비고</td></tr>
<tr><td colspan="2">용역전문성</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업무정지처분 횟수</td><td>경고 처분
횟수</td></tr>
<tr><td colspan="2">업무정지(경고)처분</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산업재해율</td><td></td></tr>
<tr><td colspan="2">안전관리</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공동수급체 수</td><td></td></tr>
<tr><td colspan="2">공동수급체구성</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월별 여성고용인원</td><td>월별 총 고용인원</td><td></td></tr>
<tr><td colspan="2">여성고용률</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월별 장애인고용인원</td><td>월별 총 고용인원</td><td></td></tr>
<tr><td colspan="2">장애인고용률</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 . . .
적격심사 대상 기관명 (인)</td></tr>
</table>